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김 장 관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장관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도입 및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 및 안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5항 특별 포상휴가 일수를 5일에서 연간 10일로, 안 별표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123
----------	----------

발의연월일: 2023. 11. 3.

발의자: 김장관, 이진환, 정순옥,  
박정환, 김기열, 황국주,  
임미연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변경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안 제13조 및 안 별표 4)
-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5항 및 안 별표 5)

###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별표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경력직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을 “연간 10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 중 “2일”을 “3일”로 하고,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5 출산의 배우자란 중 “10”을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당직) ① · ② (생 략) ④ · ⑤ (생 략)	제8조(당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lt;신 설&gt;</u>	<u>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u>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u>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u>경력직 공무원</u>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u>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u>경력직공무원</u> --- ----- ----- 5년 ----- ----- -----.
제14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u>	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영 제7조</u> ----- -----

<p>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 ----- -----.
<p>③ · ④ (생 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의장은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u>5일</u> 이내의 특별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⑤ -----  -----  ----- <u>연간 10일</u>  -----  -----  -----.</p>
<p>⑥ (생 략)</p>	<p>⑥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령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0조(특별휴가) ①~⑫ 생략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